

## 산지관리법 시행령

### <목 차>

- 1.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 정비
- 2.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관련 재해방지기준 강화
- 3.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설치조건 강화
- 4.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강화
- 5.토석채취허가시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기준 강화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림청	작 성 자	이름	신건섭
	담당부서 (과)	산지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산림복지국장		연락처	042-481-4141
	과장	산지정책과장		이메일	gsgood@mail.g o.kr

2024. 7. 2. 작성

정책책임자 직위: 산림복지국장 심상택(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 정비											
	2.규제조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1항											
	3.위임법령	산지관리법 제9조 제1항제1호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7.08~2024.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산줄기를 백두대간과 정맥으로 나누고 있어 동 정맥을 인용하여 산줄기의 정맥을 산림관련 법령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함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행 산맥을 기준으로 되어 있는 산줄기의 개념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백두대간, 정맥 등으로 정비하고,</li> <li>‘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산줄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줄기’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줄기에 포함</li> </ul>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일반국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규제자</td> <td>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 소유자</td> <td>제한지역 지정시 소유자,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의견을 묻는 등 법정절차를 거쳐 제한지역이 확정되므로 직접 규제대상 규모의 확정이 어려움</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기관</td> <td>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를 관리하는 산림청, 지자체 등 기관</td> <td>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산지관리기관 전체</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 소유자	제한지역 지정시 소유자,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의견을 묻는 등 법정절차를 거쳐 제한지역이 확정되므로 직접 규제대상 규모의 확정이 어려움	관련기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를 관리하는 산림청, 지자체 등 기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산지관리기관 전체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 소유자	제한지역 지정시 소유자, 지자체 등 관리기관의 의견을 묻는 등 법정절차를 거쳐 제한지역이 확정되므로 직접 규제대상 규모의 확정이 어려움											
관련기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를 관리하는 산림청, 지자체 등 기관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지자체 산지관리기관 전체											
9.규제목표	산림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산줄기의 개념을 일관성 있고 현실 산줄기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운영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을 산림 관련 법률과 현실 산줄기체계에 부합되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규정개정으로 직접 비용은 발생되지 않으며, 실제 지정 시에는 산지관리법 제9조에 따라 제한지역 지정시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등 법정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됨			
기타	12.규제일몰제	<b>대분류</b>	<b>소분류</b>		
		일몰설정이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이외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b>일몰설정여부</b>	<b>일몰조문</b>	<b>연장여부</b>	
		미설정			
		<b>일몰유형</b>	<b>일몰설정기간</b>	<b>일몰주기</b>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p> <p>1. 강원도 고성군·양양군·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p> <p>2.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물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p> <p>3. 강원도 강릉시·평창군·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청양군·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p> <p>② ~ ④ (생략)</p>	<p>제8조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 ----- ----- --.</p> <p>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p> <p>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맥</p> <p>3.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산줄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산줄기를 백두대간과 정맥으로 나누고 있어 동 정의를 인용하여 산줄기의 정의를 산림 관련 법령간 일관성 있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률을 운영하는 정부에서 추진할 사항임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대안의 내용

현행 산맥 기준의 산줄기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백두대간, 정맥 등으로 정비하고,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산줄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는 산줄기'를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줄기에 포함함

#### ○ 대안의 선택근거

산림 관련 법률에서 사용하고 있는 주요 산줄기의 개념을 일관성 있고 현실 산줄기체계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제도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견조회 (2024.4.5.-4.15)	의견없음	해당없음
일반국민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중	

## 3. 규제목표

산림 관련 법령에서 산줄기 개념의 일관성 있게 적용하고 현실 산줄기 체계에 부합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제도 운영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대상 규제대안은 산림청장이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해 특히 필요하여 지정하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주요 산출기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백두대간, 정맥 등을 인용하여 정비하는 등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또한, 실제 제한지역 지정을 위해서는 산지관리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산지소유자, 지역주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목적과 수단간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준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집단 특정
④ 대상 업종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의 소유자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 및 특성 규제대상 집단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의 소유자로 특정 대상으로 볼 수 있음</p> <p>② 유사사례 분석 현행 산지관리법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22년말 33,468ha)의 지정에 있어 공통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지정대상 산지를 차등화하지 않고 있음</p> <p>③ 차등화 대상 결정 해당 규제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차등화 하는 것은 규제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해치게 되므로 규제 차등화 불필요</p>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배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해당없음

#### ○ 타법사례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로 “백두대간” 과 “정맥” 을 규정한 것으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백두대간)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정맥)에서 각각 “백두대간” 과 “정맥” 을 정의하고 있음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백두대간” 이란 백두산에서 시작하여 금강산, 설악산, 태백산, 소백산을 거쳐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큰 산줄기를 말한다.
- 1의2. “정맥” 이란 백두대간에서 분기하여 주요하천의 분수계(分水界)를 이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줄기” 란 다음 각 호의 산줄기를 말한다.

1. 한북정맥: 강원특별자치도 세포군 소재의 식개산에서 운악산, 한강봉을 거쳐 경기도 파주시 소재의 장명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2. 낙동정맥: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소재의 매봉산에서 운주산, 엄광산을 거쳐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물운대로 이어지는 산줄기
3. 한남금북정맥: 충청북도 보은군 소재의 속리산에서 보광산, 소속리산을 거쳐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4. 한남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광교산, 가현산을 거쳐 경기도 김포시 소재의 문수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5. 금북정맥: 경기도 안성시 소재의 칠장산에서 백월산, 오서산을 거쳐 충청남도 태안군 소재의 지령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6. 금남호남정맥: 경상남도 함양군 소재의 영취산에서 장안산, 마이산을 거쳐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7. 금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싸리재, 계룡산을 거쳐 충청남도 부여군 소재의 부소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8. 호남정맥: 전라북도 진안군 소재의 조약봉에서 내장산, 무등산을 거쳐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의 백운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9. 낙남정맥: 경상남도 산청군 소재의 지리산에서 옥산, 불모산을 거쳐 경상남도 김해시 소재의 분성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산림청장이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추가부담이 없어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산지를 법령에 정비하는 것으로 예산수반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 재정부담이 없어 집행가능성이 높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산림청장이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 재해예방 등 공공의 이익증진을 위하여 특히 보전이 필요한 산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산줄기인 "백두대간"과 "정맥"을 인용하여 산림관련 법령 적용에서 일관성을 확보하도록 정비하는 등 합리적인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제도 운영을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가 타당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 관련 재해방지기준 강화											
	2.규제조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											
	3.위임법령	산지관리법 제15조제2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7.08~2024.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설 등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산림청)’ 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범부처합동)’ 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과제로</p> <p>○ 산사태로부터 산지 내 설치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인명·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시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해 산사태취약지역 편입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의 강화로 기후변화 등 위기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p>											
	7.규제내용	○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시 산사태취약지역을 편입하지 않도록 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입을 허용하도록 설치조건을 강화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려는 자, 재난 대응 정부부처, 행정처분을 하는 산림청 및 지자체 산림부서 등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신청하려는 자</td> <td>’ 23년 기준 299건</td> </tr> <tr> <td>관련기관</td> <td>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산림청,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td> <td></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신청하려는 자	’ 23년 기준 299건	관련기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산림청,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신청하려는 자	’ 23년 기준 299건											
관련기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산림청,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												
9.규제목표	○ 산사태 등 재해로부터 국민(농림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도모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b>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b>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시 산사태취약지역을 포함하여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 발생하나, 산지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의 산사태 인명피해 최소화라는 편익이 더 큼			
기타	<b>12.규제일몰제</b>	<b>대분류</b>	<b>소분류</b>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b>일몰설정여부</b>	<b>일몰조문</b>	<b>연장여부</b>	
		미설정			
	<b>일몰유형</b>	<b>일몰설정기간</b>	<b>일몰주기</b>		
<b>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b>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u>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u>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 시설의 경우			별표 3 산지전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u>설치지역 및 설치조건(제18조 관련)</u> 5. 농림어업인의 주택시설과 그 부대 시설의 경우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설치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설치조건
가. 농림어 업인의 주 택 시설 과 그 부대시 설	산 지 전 용·일 시 사용 제한지 역이 아 닌 산지	농림어업인이 농 림어업을 직접 경 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 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 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 방법은 제12조제 4항을 준용한다)	가. 농림어 업인의 주 택 시설 과 그 부대시 설	산 지 전 용·일 시 사용 제한지 역이 아 닌 산지	1)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 로 거주하기 위하 여 자기소유 산지 에 설치하는 시설 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 일 것(이 경우 자 기 소유의 기존 임 도를 활용하여 설 치 가능하며, 부지 면적의 산정방법 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u>2)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의 산 사태취약지역을 편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 지시설을 설치하 는 경우에는 그러 지 아니하다.</u>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3년 경북지역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설 등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마련('23.8.25)하여 산지에 설치하는 농림어업인 주택과 그 부대시설은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요건으로 산지전용을 허용하기로 결정
- 동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2024년 세부실행계획('24.2.22)'에도 추진과제로 포함 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중인 과제임
- 현행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과 그 부대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 시설치조건에 재해방지를 위한 조건이 없으나,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폭우 등 위기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지 내 설치하는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은 산사태취약지역을 편입하지 않도록 하고 편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제하는 것이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농림어업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조건 강화 및 예외인정
	내 용	산사태취약지역 편입을 제한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예외적으로 편입허용
규제대안2	대안명	농림어업인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조건 강화
	내 용	산사태취약지역 편입을 전면적으로 제한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산사태로부터 농림어업인 주택 피해 최소화로 인명 및 재산보호	소유 산지의 현황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통해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 가능
규제대안2	산사태로부터 농림어업인 주택 피해 최소화로 인명 및 재산보호	산사태 취약지역에서는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가 예외없이 불가하여 산지소유자의 산지활용 제약 큼

- (선택근거)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결정된 과제로 산지 내 설치되는 '농림어업인 주택과 그 부대 시설'의 설치조건 강화가 필요하나 산지의 소유현황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범정부 TF (10회, 2023.7.24~11.17)	의견없음	해당없음
한국산지보전협회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견조회 (2024.4.5-4.15)	의견없음	해당없음
산지에 농림어업인 주택을 설치하려는 자	입법예고 예정		

### 3. 규제목표

산지 내 설치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이 폭우 등 위기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설치 조건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대상 규제대안은 산지에 설치하는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 시설에 대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설부지 편입 제한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한정하고, 재해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조건을 강화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됨
- 설치조건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어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준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집단 특정
④ 대상 업종	산지전용(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하려는 자 * 2023년 기준 299건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 및 특성 규제대상 집단은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을 설치하기 위해 산지전용신고를 하려는 자로 특정 대상으로 볼 수 있음</p> <p>② 유사사례 분석 산지전용신고시 신고 대상별로 각각 공통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차등화하지 않음</p> <p>③ 차등화 대상 결정 해당 규제는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전용신고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조건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차등화 하는 것은 규제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해치게 되므로 규제 차등화 불필요</p>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강화로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전용신고 시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관된 기준적용이 필요하므로 일몰설정은 불필요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의 포괄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새로운·다양한 유형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 적용 대상만 열거할 필요가 없음
사후 평가관리		본 규정은 사전 심의·검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 평가·관리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본 규정은 신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일부 면제·유예를 통한 테스트 허용이 필요하지 않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해당없음

#### ○ 타법사례

산지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전용신고시 설치조건을 강화는 규정으로 타법에 유사사례는 없으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 의 목적이 산지에서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거주자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사태취약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시설을 하거나 재해방지시설을 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산지전용 신고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추가부담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농림어업인주택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의 선택에 의해 자비로 재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부담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산림청 법령정비협의회('24.1.4), 관계기관 의견조회('24.4.5-'24.4.15), 사전규제심사('24.6.28)등을 거쳤으며, '24.7.8부터 24.8.17까지 입법예고 실시하여 국민,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처리현황을 점검하여 준수 여부 확인

### 3. 종합결론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설 등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산림청)'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범부처합동)'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 규제강화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산지 내 설치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시 설치기준을 강화함이 타당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설치조건 강화											
	2.규제조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3의3											
	3.위임법령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8조의3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7.08~2024.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현행 풍력발전시설은 산지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재해위험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풍력발전시설을 위한 진입로'는 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으로 훼손면적이 크고 재해위험이 있는 시설임에도 별도의 재해위험 검토를 실시할 근거가 없음</p> <p>○ 풍력발전시설 진입로로 인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산사태 등 재해예방을 위해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해 재해위험을 검토하도록 하는 규제강화가 필요하나 사업자 등의 자발적 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p>											
	7.규제내용	<p>○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해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른 재해위험 검토 결과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진입로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허용</p>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 풍력발전시설 사업(예정)자, 재난대응 정부부처, 지자체 등</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풍력발전시설 사업(예정)자</td> <td>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246개 사업자</td> </tr> <tr> <td>관련기관</td> <td>한국풍력산업협회</td> <td>154개 회원사</td> </tr> </tbody> </table>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풍력발전시설 사업(예정)자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246개 사업자	관련기관	한국풍력산업협회	154개 회원사
	유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풍력발전시설 사업(예정)자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은 246개 사업자											
관련기관	한국풍력산업협회	154개 회원사											
9.규제목표	<p>○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재해안전성 강화로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p>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p>○ 재해위험이 있어 재해방지시설 설치 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관련 산사태 등 재해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편익이 더 큼</p>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b>일몰설정여부</b>		<b>일몰조문</b>	<b>연장여부</b>
		미설정			
		<b>일몰유형</b>		<b>일몰설정기간</b>	<b>일몰주기</b>
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u>설치지역 및 설치조건</u>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별표 3의3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대상시설·행위의 범위, <u>설치지역 및 설치조건</u> 3.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는 진입로의 경우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설치조건	대상시설 ·행위의 범위	설치 지역	설치조건
나. 풍력발 전시설을 위 한 진입로	해당 시 설을 설 치할 수 있는 지 역	1) 산지경관 영향 모의실험을 실시하 여 경관훼손을 줄 이는 <u>대책을 수립 할 것</u> 2) 「산림보호법」 제45조의5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가 편입되 지 아니할 것. 다 만, 재해방지시설 을 설치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3) 연장거리는 10 킬로미터 이하일 것. 이 경우 기존 임도구간은 <u>제외한 다.</u> 4) <u>길어깨·옆도랑 의 너비는 각각 0.5미터 이상 1미 터 이하로 하고, 절토·성토한 비탈 면을 제외한 도로 의 유효너비는 4미 터 이하일 것. 다 만, 대피소, 차돌 림곳, 곡선부 등의</u>	나. 풍력발 전 시 설 을 위한 진입 로 (발전시 설 사이의 <u>연결로를 포함한다</u> )	해당 시 설을 설 치할 수 있는 지 역	1)----- ----- ----- <u>대책을 수립 할 것. 다만, 「자 연환경보전법」 제 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 에는 제외한다.</u> 2)(현행과 같음) 3)----- ----- <u>제외한다. 다만, 기 존임도구간과 4)의 전단에 따라 적합 하게 설치하는 구 간은 제외한다.</u> 4) 「산림자원의 조 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에 따른 산림관리 기반시설 중 임도 시설의 타당성평가 와 설계 및 시설기 준에 적합할 것. 다 만, 발전시설 사이 의 연결로에는 적 용하지 않을 수 있 으며, 현지어건 상

현 행		개 정 안	
	<p><u>유효너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p>5) <u>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u></p> <p>6) <u>설계속도는 40 km/h 이하일 것</u></p> <p>7) <u>종단기울기는 20퍼센트 이하일 것(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는 제외한다)</u></p> <p>8) <u>공사착공일부터 「전기사업법」 제 9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작을 신고하고 3년이 되는 날까지 산지보전협회가 수행하는 현장점검을 받도록 현장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할 것</u></p>		<p><u>기준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상, 종단기울기는 20% 이하로 할 수 있다.</u></p> <p>5) <u>횡단면도상 노폭(비탈면을 포함한다)의 원지반 경사가 35도를 넘는 구간이 전체 진입로의 100분의 10 이하일 것</u></p> <p>6) <u>삭제</u></p> <p>7) <u>삭제</u></p> <p>8) <u>(현행과 같음)</u></p> <p><u>9)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 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정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에 따라 풍력발전의 개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림훼손 및 산사태 등 재해발생 우려도 증가하고 있음
- 감사원은 실질적으로 훼손면적이 큰 풍력발전 진입로 등 부대시설이 산지일시사용신고로 재해위험성 검토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지적(19.6)
- 풍력발전진입로 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 등 재해위험 최소화를 위해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사태 위험을 검토하도록 할 필요가 있어 규제를 통한 정부개입이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설치조건 강화 및 예외인정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로 대상지를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으로 제한하되,</li> <li>-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li> </ul>
규제대안2	대안명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설치조건 강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입로 대상지를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으로 제한하고 예외를 불인정</li> </ul>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 및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에서도 현지 여건 상 진입로 개설이 불가피한 경우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진입로 개설 가능
규제대안2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개설로 인한 산사태 발생 및 이로 인한 국민의 인명.재산피해 최소화	산사태 발생위험이 높은 지역이나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은 풍력발전 시설 진입로 개설이 예외없이 불가하여 현지여건을 고려한 사업에 어려움 발생

- (선택근거)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등을 막기 위해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한 재해위험 검토가 필요하나, 진입로 개설에 해당산지의 편입이 불가피한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풍력발전 사업(예정)자	2022.11.30. / 경북 영양 / 현장 방문	연장거리 10km 이하 규정 삭제 요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반영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에너지공단	면담 및 유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사태위험지도상 1등급지 편입 허용 요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사)한국풍력산업협회 산업통상자원부 GS풍력발전, 한국에너지공단, 산림기술사	2023.3.15. / 산림청 입법예고 제출의견 검토회의	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는 현지여건 상 적용이 불가능한 경우 임도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단서 신설 요청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반영

## 3. 규제목표

산지 내 설치되는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한 재해위험 검토를 실시하고,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은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산사태 발생을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 대상 규제대안은 산지에 설치하는 풍력발전시설 진입로로 인한 산사태 발생위험을 줄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한정하여 진입로 설치를 제한하되, 재해방지시설 등의 경우에는 산사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설치조건을 강화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됨
- 설치조건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준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집단 특정
④ 대상 업종	풍력발전시설업(246개사업자)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 및 특성 규제대상 업체는 산지 내 풍력발전사업자로 특정 대상으로 볼 수 있음</p> <p>② 유사사례 분석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신고 대상별로 각각 공통 적용되는 설치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차등화하지 않음</p> <p>③ 차등화 대상 결정 해당 규제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행정처분 기준으로 이를 차등화하는 것은 규제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해치게 되므로 규제 차등화 불필요</p>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강화로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시설물의 설치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관된 기준적용이 필요하므로 일몰설정은 불필요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의 포괄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새로운·다양한 유형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 적용 대상만 열거할 필요가 없음
사후 평가관리		본 규정은 사전 심의·검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 평가·관리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본 규정은 신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일부 면제·유예를 통한 테스트 허용이 필요하지 않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해당없음

#### ○ 타법사례

- 산지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시 설치조건을 강화하는 규정으로 타법에 유사사례는 없으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 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 의 목적이 산지에서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설치시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포함하지 않고 시설을 하거나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하고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산지일시 사용신고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추가부담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풍력발전시설 진입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의 선택에 의해 자비로 재해방지시설 등을 설치하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 부담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산림청 법령정비협의회('24.1.4), 관계기관 의견조회('24.4.5-'24.4.15), 사전규제심사('24.6.28)등을 거쳤으며, '24.7.8~'24.8.17 입법예고 실시하여 국민,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풍력발전시설 진입로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업무 처리현황을 점검하여 준수여부 확인

### 3. 종합결론

-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설 등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산림청)'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범부처합동)'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 규제강화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산지 내 설치되는 농림어업인 주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농림어업인 주택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신고 시 설치기준을 강화함이 타당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강화											
	2.규제조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4											
	3.위임법령	산지관리법 제18조제5항 및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6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7.08~2024.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p>○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설 등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 등을 위해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산림청)’ 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 대응 혁신방안(범부처합동)’ 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과제로</p> <p>○ 산사태 취약지역 및 경사지의 재해관리를 강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p>											
	7.규제내용	<p>○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표4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제1호다목의 ‘세부기준’ 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닐 것” 을 추가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로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를 추가</p> <p>○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표 4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제2호나목의 ‘전용면적’ 란에서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대해 제2호나목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함</p> <p>○ 산사태 취약지역 재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별표 4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 란에 660제곱미터 이하에도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세부기준’ 란에서 평균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p>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p>○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규제요건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style="width: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피규제자</td> <td>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규제요건에 해당하는 자</td> <td style="text-align: center;">2023년 기준 전체 산지전용허가(협의)건수 20,123건</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관련기관</td> <td>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산림청,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td> <td></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규제요건에 해당하는 자	2023년 기준 전체 산지전용허가(협의)건수 20,123건	관련기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산림청,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산지전용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규제요건에 해당하는 자	2023년 기준 전체 산지전용허가(협의)건수 20,123건										
관련기관	행안부, 국토부,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산림청, 전국 지자체 산림부서												
9.규제목표	<p>○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지의 합리적 보전과 이용을 도모</p>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b>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b>	○ 산사태 취약지역에서의 재해저감대책 수립, 660제곱미터 이하의 산지전용시 평균경사도 조사비용이 제한적으로 발생(재해영향평가 협의, 산림조사서 작성 등에 이미 포함되어 작성된 경우는 미발생)하나,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산사태발생 및 인명피해 최소화로 인한 편익이 더 큼		
기타	<b>12.규제일몰제</b>	<b>대분류</b>	<b>소분류</b>	
		일몰설정에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b>일몰설정여부</b>	<b>일몰조문</b>	<b>연장여부</b>
		미설정		
		<b>일몰유형</b>	<b>일몰설정기간</b>	<b>일몰주기</b>
		<b>13. 우선허용·사후 규제 적용여부</b>	해당없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p> <p>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허가기준</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td> <td style="vertical-align: top;">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td> </tr> </tbody> </table> <p>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허가기준</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전용면적</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닐 것</td> <td style="vertical-align: top;">2만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td> <td style="vertical-align: top;">1)~2) (생략)</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닐 것</td> <td style="vertical-align: top;">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td> <td style="vertical-align: top;">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td> </tr> </tbody> </table>	허가기준	세부기준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닐 것	2만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1)~2) (생략)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닐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p>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제20조제6항 관련)</p> <p>1. 산지전용 시 공통으로 적용되는 허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허가기준</th> <th style="width: 50%; text-align: center;">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td> <td style="vertical-align: top;">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의 산사태취약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의 예측 및 산사태 등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거나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td> </tr> </tbody> </table> <p>2. 산지전용면적에 따라 적용되는 허가기준</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허가기준</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전용면적</th> <th style="width: 33%; text-align: center;">세부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닐 것</td> <td style="vertical-align: top;">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td> <td style="vertical-align: top;">1)~2) (현행과 같음)</td> </tr> <tr> <td style="vertical-align: top;">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닐 것</td> <td style="vertical-align: top;">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하며, 660제곱미터미만의 산지전용은 1), 1의 2)만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td> <td style="vertical-align: top;">1)----- ----- ----- -----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td> </tr> </tbody> </table>	허가기준	세부기준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의 산사태취약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의 예측 및 산사태 등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거나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닐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1)~2) (현행과 같음)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닐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하며, 660제곱미터미만의 산지전용은 1), 1의 2)만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 -----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
허가기준	세부기준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닐 것	2만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1)~2) (생략)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닐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허가기준	세부기준																										
다.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	1)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산림보호법」 제2조제13호의 산사태취약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의 예측 및 산사태 등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거나 재해방지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허가기준	전용면적	세부기준																									
나.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아닐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 전용에 적용	1)~2) (현행과 같음)																									
다. 산지의 형태 및 임목의 구성 등의 특성으로 인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산림에 해당되지 아닐 것	660제곱미터이상의 산지전용에 적용하며, 660제곱미터미만의 산지전용은 1), 1의 2)만 적용. 다만, 비고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 ----- -----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																									

현 행		개 정 안	
	<p>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p>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p> <p>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p>		<p>일 것</p> <p>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의2) 1)에도 불구하고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p>

현 행	개 정 안	
		<p>가)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p> <p>나) 재해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p> <p>다)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 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p> <p>라)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 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23년 경북지역의 폭우로 인한 산사태 인명피해 발생을 계기로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설 등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산림청은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을 마련('23.8.25)하여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중 아래 사항을 강화하기로 결정하였음
  - 별표 4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제1호다목의 '세부기준'란에 “산사태취약지역이 아닐 것”을 추가하고 산사태취약지역에서 허용되는 예외적 경우로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를 추가
  - 별표 4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제2호다목의 '전용면적'란에 660제곱미터 이하에도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되, '세부기준'란에 평균경사도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
- 동 내용은 관계부처 합동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에도 추진과제로 포함되어 범정부 차원에서 국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 중인 과제임
- 또한,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개정·시행('21.12.16)으로 산지전용허가신청 시 66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재해위험성검토 의견서를 받아 토사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를 검토하고 있으나(규개위 심사완료, '21.11.15)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제2호나목의 산지전용허가기준에서는 “토사의 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의 전용대상 면적이 2만제곱미터 이상으로 남아있어 제도운영 취지 및 현실 운영에 맞게 현행화하고자 함
- 이처럼 산사태 취약지역 및 경사지의 재해관리를 강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일부를 강화하는 내용이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산지전용 세부허가 기준 강화 및 예외 인정
	내용	-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별표4제2호나목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산지전용시 산사태취약지역 편입제한, 660제곱미터 산지전용시도 평균경사도 검토실시를 규정하되 타 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등은 예외로 허용
규제대안2	대안명	산지전용 세부허가 기준 강화 및 예외 불인정
	내용	660제곱미터 이상의 산지전용에 별표4제2호나목의 허가 기준을 적용하고, 산지전용시 산사태취약지역 편입제한, 660제곱미터 산지전용시도 평균경사도 검토실시를 규정하되 타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등에도 예외를 불인정

#### ○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소유 산지의 현황 등으로 산사태 취약지역이나 25도 이상의 경사지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통해 목적사업 가능
규제대안2	산지전용허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 최소화로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	산사태 취약지역, 25도이상 경사지에서 산지전용 제한으로 산지 소유자의 산지활용 제약 큼

- (선택근거) 제도운영을 현실운영에 맞게 현행화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피해 등을 막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추진 결정된 과제의 추진을 위해 산지 내 설치되는 시설의 설치조건을 강화하되 산지의 소유현황 등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재해방지시설 설치 등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 · 장소 · 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행안부, 국토부,	기후위기 대응 수해방지	의견없음	해당없음

환경부, 소방청, 기상청 등 재난 대응 정부부처	범정부 TF (10회 2023.7.24~11.17)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견조회 (2024.4.5.-4.15)	의견없음	해당없음
산지에 농림업인 주택을 설치하려는 자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 중	

### 3. 규제목표

산지전용을 통해 산지 내 설치되는 시설이 폭우 등 위기상황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전용허가기준을 강화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 도입대상 규제대안은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시설부지에 산사태취약 지역 편입을 제한하고 재해저감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허용하며, 660 제곱미터만으 산지전용시에도 평균경사도를 검토하도록 하되 타 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등은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범위에서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비례적 타당성이 확보됨
-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 강화를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 등으로 발생하는 산사태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규제로 인한 비용보다 편익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됨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입지/건축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준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집단 특정
④ 대상 업종	산지전용허가(협의)를 받으려는 자 * 2023년 기준 20,123건
⑤ 예비분석내용	<p>규제 대상 집단 및 특성 규제대상 집단은 산지 내 시설 등 설치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로 특정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업종을 구분할 수는 없음</p> <p>② 유사사례 분석 산지전용허가시 허가대상별로 각각 공통 적용되는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차등화하지 않음</p> <p>③ 차등화 대상 결정 해당 규제는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대상 시설의 전용허가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를 차등화 하는 것은 규제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해치게 되므로 규제 차등화 불필요</p>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 배제

○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강화로 진입제한 또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해당하지 않음

- 일몰설정 여부

재해방지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시 세부기준을 보완한 것으로 국가의 질서유지를 위해 일관된 기준적용이 필요하므로 일몰설정은 불필요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산지전허가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의 포괄적 개념 정의가 필요하지 않음
유연한 분류 체계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산지전허가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새로운·다양한 유형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지 않음
네거티브 리스트		본 규정은 전체 산지 내 산지전허가 대상시설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별도 적용 대상만 열거할 필요가 없음
사후 평가관리		본 규정은 사전 심의·검사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사후 평가·관리 도입이 필요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본 규정은 신사업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일부 면제·유예를 통한 테스트 허용이 필요하지 않음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해당없음

#### ○ 타법사례

- 산지에서의 재해방지를 위한 산지전용허가시 설치조건을 강화는 규정으로 타법에 유사사례는 없으나,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에서는 산사태취약지역에서 산사태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 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음

#### ■ 산림보호법

제45조의11(산사태취약지역의 관리) 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응급조치 및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지점검 실시 결과 산사태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관련 시설·토지 등의 사용을 제한·금지하거나 보수·보강 또는 제거 등 안전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토지의 소유자 및 관계인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할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은 제2항의 안전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신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한다.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순응도

##### ○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규제 의 목적이 현실운영에 맞게 제도운영을 현실화하고, 산지에서 폭우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산사태로부터 인명과 산지전용시설의 보호 등을 위한 것이며, 산지전용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산사태취약지역을 포함하지 않고 시설을 하거나 재해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등 현실여건을 반영한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피규제자의 준수 가능성이 높음

#### 2.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산지전용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추가부담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익자의 선택에 의해 자비로 재해저감대책 수립 등을 하며, 예산을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므로 추가부담 없음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추진 경과

- 산림청 법령정비협의회('24.1.4), 관계기관 의견조회('24.4.5-'24.4.15), 사전규제심사('24.6.28)등을 거쳤으며, '24.7.8~'24.8.17 입법예고 실시하여 국민, 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할 예정

### 2. 향후 평가계획

- 산지전용허가 현황 및 산지전용허가지 점검을 통해 준수 여부 확인

### 3. 종합결론

- 현실운영에 맞는 제도운영과 기후변화에 따른 폭우, 강설 등의 증가로 인한 산사태 발생과 이로 인한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 '산사태 인명피해 저감대책(산림청)'과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범부처합동)'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과제로
- 규제강화를 통해 산사태로부터 산지 내 설치되는 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 세부기준의 일부강화가 타당함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토석채취허가시 경관훼손 및 재해방지 기준 강화											
	2.규제조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8											
	3.위임법령	산지관리법 제28조제1항제2호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4.07.08~2024.08.17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토석채취허가시 적치된 토사의 안전관리 및 허가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관련 토석채취허가기준의 일부를 강화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규제의 강화에 관한 사하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7.규제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 복구용 표토 등)에 대한 성토 기울기 및 재해예방 조치시행 등 안전관리 기준 규정</li> <li>○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li> </ul>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colspan="2">유 형</th> <th>인원수 또는 규모</th> </tr> </thead> <tbody> <tr> <td>피규제자</td> <td>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td> <td>평균 175건/년</td> </tr> <tr> <td>이해관계자</td> <td>토석채취허가지 주변 지역주민, 지자체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td> <td>전국 지자체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다수</td> </tr> </tbody> </table>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평균 175건/년	이해관계자	토석채취허가지 주변 지역주민, 지자체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	전국 지자체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다수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평균 175건/년											
이해관계자	토석채취허가지 주변 지역주민, 지자체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	전국 지자체 토석채취허가 담당 공무원 및 지역주민 다수											
9.규제목표	토석채취허가지 내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여 토석채취허가지의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생활환경 피해를 최소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현행 토석채취허가지에서도 적치되는 토석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생활환경피해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여 허가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토석채취허가지의 재해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편익이 큼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b>일몰설정여부</b>		<b>일몰조문</b>	<b>연장여부</b>	
		미설정				
		<b>일몰유형</b>		<b>일몰설정기간</b>	<b>일몰주기</b>	
		13. 우선허 용 ·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p>	<p>■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8] 토석채취허가기준(제36조제1항 관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20%;">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허 가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8. 경관훼손 및 재해 방지</td> <td style="padding: 5px;"> <p>가. ~ 라. (생략) &lt;신설&gt;</p> <p>&lt;신설&gt;</p> </td> </tr> </tbody> </table>	구 분	허 가 기 준	8. 경관훼손 및 재해 방지	<p>가. ~ 라. (생략) &lt;신설&gt;</p> <p>&lt;신설&gt;</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 width: 20%;">구 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허 가 기 준</th> </tr> </thead> <tbody> <tr> <td style="vertical-align: top; padding: 5px;">8. 경관훼손 및 재해 방지</td> <td style="padding: 5px;"> <p>가. ~ 라. (생략)</p> <p>마.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표토 등)는 별도 적치장을 마련하고 성토 시 경사 1:1.0 이하의 완만한 기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조치 등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p> <p>바.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피해저감계획(진입로 포장 등)을 수립할 것</p> </td> </tr> </tbody> </table>	구 분	허 가 기 준	8. 경관훼손 및 재해 방지	<p>가. ~ 라. (생략)</p> <p>마.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표토 등)는 별도 적치장을 마련하고 성토 시 경사 1:1.0 이하의 완만한 기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조치 등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p> <p>바.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피해저감계획(진입로 포장 등)을 수립할 것</p>
구 분	허 가 기 준								
8. 경관훼손 및 재해 방지	<p>가. ~ 라. (생략) &lt;신설&gt;</p> <p>&lt;신설&gt;</p>								
구 분	허 가 기 준								
8. 경관훼손 및 재해 방지	<p>가. ~ 라. (생략)</p> <p>마.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표토 등)는 별도 적치장을 마련하고 성토 시 경사 1:1.0 이하의 완만한 기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조치 등 재해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p> <p>바.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피해저감계획(진입로 포장 등)을 수립할 것</p>								

# I.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별표 8의 토석채취허가기준은 재해예방 및 토석채취 후 원활한 복구를 위해 토석의 용도별로 절개사면(절토 비탈면) 기울기를 정하고 있으나,  
\* (건축용) 1:0.4 이하, (공예·조경·쇄골재·토목용) 1:0.5 이하, (토사) 1:1 이하  
폐석분토, 표토 등 허가지 내 장기간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성토 및 관리 기준은 미흡하여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리기준 마련 필요  
\* 재해를 비교('22년) : 전체평균 0.63%, 광업(채석포함) 32.52%(평균대비 52배)
- 또한 토석채취허가기준에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한 피해저감계획 수립을 규정하고자 하는 규제 사항으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함

##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 복구용 표토 등)에 대한 성토 기울기 및 재해예방 조치시행 등 안전관리 기준 마련
  - 토석채취허가기준으로 소음·진동 등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피해저감계획을 수립할 것을 규정
- (선택근거)
  - 현행 토석채취허가기준에 미비되어 있는 허가지내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성토기울기 등 안전관리기준과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지역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규정하여 토석채취허가지로 인한 재해 발생 및 지역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대안을 선택함

###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일시·장소·방법	제시의견	조치결과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의견조회 (2024.4.5.-4.15)	의견없음	해당없음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입법예고 예정	입법예고중	
--------------------	---------	-------	--

### 3. 규제목표

토석채취허가지 내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적용으로 토석 채취허가지의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고 토석채취허가지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진동·먼지 등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

## II. 규제의 적정성

###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토석채취허가로 인한 재해예방을 위해 토석채취허가기준 중 토사의 굴취·채취 시의 경사도 기준인 1:1.0이하와 동일하게 적치된 토사의 관리기준을 규정하고,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최소화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어 규제의 목적과 수단에 있어 비례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음

###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 ○ 영향평가

#####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제조인허가
② 규제 방식	기준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표본모델
판단 근거	규제대상집단 특정
④ 대상 업종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 * 최근 5년 평균 연간 175건
⑤ 예비분석내용	<p>① 규제 대상 집단 및 특성 규제대상 집단은 산지 내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로 특정 대상으로 볼 수 있음</p> <p>② 유사사례 분석 토석채취허가시 대상별로 공통 적용되는 허가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차등화하지 않음</p> <p>③ 차등화 대상 결정 해당 규제는 재해방지 및 지역주민 생활환경 피해 최소화를 위한 규정으로 이를 차등화 하는 것은 규제의 공정성, 형평성 등을 해치게 되므로 규제 차등화 불필요</p>
⑥ 차등화적용 여부	차등화 적용배제

###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 ○ 해외사례

해당없음

#### ○ 타법사례

해당없음



### Ⅲ. 규제 의 실효성

#### 1. 규제 의 집행가능성

##### ○ 행정적 집행가능성

이미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등 허가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토석채취 허가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바, 추가부담 없음

##### ○ 재정적 집행가능성

현행 토석채취허가에서도 적치되는 토석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생활환경피해 관련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치고 있으나 이를 법령에 명확히 하여 허가기준으로 규정한 것으로 추가부담이 없이 토석채취허가의 재해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편익이 큼

## IV.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 1. 종합결론

현행 일정한 기준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적치된 토사의 안전관리 및 지역주민의 생활환경피해 최소를 위한 재해방지대책 수립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토석채취허가지내 재해방지 및 안전사고방지에 기여하고 허가지 주변 주민의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규제강화가 타당함